**특별보고관 임기 내 마지막 보고서에서 촉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층에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제네바(2016년 3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DPRK”) 내 억압이 여전하며 DPRK당국은 계속해서 주민 모두의 일상을 속속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특별보고관 마르주끼 다루스만이 말했다. “DPRK 내 전체주의적 통치 구조는 개인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이러한 통치 구조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국가 전반에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DPRK 내에서 자행되는 반인도범죄 책임을 김정은을 포함하여 DPRK 지도층에 확실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DPRK내 인권에 대한 특별보고관 마르주끼 다루스만(이하 “특별보고관”)이 오늘 UN인권이사회에 임기 내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하며 촉구했다.

“DPRK 정권은 극단적으로 중앙집권적이며 계급화된 통치 구조를 갖추고 사회 최소 단위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에 지휘관 및 상급자 책임 원칙을 적용한다면 “최고지도자” 김정은과 전현직 고위급 지도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특별보고관은 강조했다.

특별보고관은 DPRK가 2016년 1월 6일 제 4차 핵실험을 수행하고 이어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음을 상기하며, 강조하길 “내부적으로 주민 인권을 부인하여 공격적인 군사력 증강 계획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마련했다. 이는 동전의 양면이다”

최근 DPRK 정권이 무력 조치를 취한 후, 복수의 관련국 정부가 한국전쟁 시 맺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일을 언급하는 횟수가 늘어났다고 특별보고관은 언급했다.

“반인도범죄 책임규명은 평화협정 체결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한반도 미래를 논의할 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특별보고관은 “반인도범죄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는 인류 전체의 문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반인도범죄 책임규명을 위해 마땅히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보고관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당사국으로 대한민국, 일본 등 주변국이 할 수 있을 역할도 강조했다. 로마규정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하에 다룰 수 있는 범죄를 명시하고, 당사국에 국제형사재판소와 협력할 수 있는 메커니즘 등을 명시한다.

이어 보편관할권 원칙을 적용하여 제 3국[제 2국]에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했다. 특별보고관은 책임규명 조치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
(group of experts)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촉구했다.

특별보고관은 “지금이 한반도인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며, 국제사회가 DPRK 내 반인도범죄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결의를 다진다면 개개인의 삶에, 또한 아시아를 비롯한 지역 내 인권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거이다”라고 특별보고관은 발언을 마무리했다.

**(\*)** 보고서 전문 (A/HRC/31/70): <http://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31/Pages/ListReports.aspx>

끝

*특별보고관 마루즈끼 다루스만(인도네시아)은 2010년 8월 UN인권이사회에서 DPRK 내 인권 실태 조사 임무를 부여 받아 임명되었다.특별보고관 다루스만은 여타 정부나 기관과 무관하게 개인 역량으로 독립적 임무를 수행한다. 과거 3인으로 구성된 고 부토 파키스탄 총리 암살사건 진상조사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UN 사무총장이 설치한 스리랑카 전범 관련 전문가 패널 의장을 역임하였다. 2013년 3월부터 특별보고관 직과 겸임하여 인권이사회의 임명을 받아 DPRK 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3인으로 구성된 UN 조사위원회에 참여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ohchr.org/EN/HRBodies/SP/CountriesMandates/KP/Pages/SRDPRKorea.aspx*](http://www.ohchr.org/EN/HRBodies/SP/CountriesMandates/KP/Pages/SRDPRKorea.aspx)

*특별보고관은 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제도의 일부이다. 특별절차는 UN 인권 제도 하에서 가장 많은 수의 독립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로, 특정국가 인권 또는 전세계에 적용하는 특정인권주제를 다루기 위해 독립적으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모니터링한다. 특별절차를 구성하는 전문가는 UN 직원 신분이 아니며 무보수로 자발적 업무에 임한다. 또한 여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UN 인권 국가별 웹페이지 – DPRK:* [*http://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KPIndex.aspx*](http://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KPIndex.aspx)

*서울UN 인권사무소 웹페이지:* [*http://seoul.ohchr.org/EN/Pages/HOME.aspx*](http://seoul.ohchr.org/EN/Pages/HOME.aspx)

*추가 정보 및 언론사 문의는 타렉 쉐니티 (+82 10 5927 8724/* *tcheniti@ohchr.org* */영어 문의) 또는 안윤교 (+82 10 6607 3595 /* *yahn@ohchr.org* */한국어 문의)로 연락 바랍니다.*

유엔 독립 전문가 관련 **언론 질의**: Xabier Celaya, UN Human Rights – Media Unit (+ 41 22 917 9383 / xcelaya@ohchr.org)

**언론사 뉴스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관련:** 보도자료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핸들(아이디,주소)을 이용해 태그해 주시기 바랍니다.
Twitter: [@UNHumanRights](http://twitter.com/UNHumanRights)
Facebook: [unitednationshumanrights](https://www.facebook.com/unitednationshumanrights)
Instagram: [unitednationshumanrights](http://instagram.com/unitednationshumanrights)

Google+: [unitednationshumanrights](https://plus.google.com/%2Bunitednationshumanrights/posts)
Youtube: [unohchr](https://www.youtube.com/user/UNOHCHR)